

第18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5.12.19. ~ 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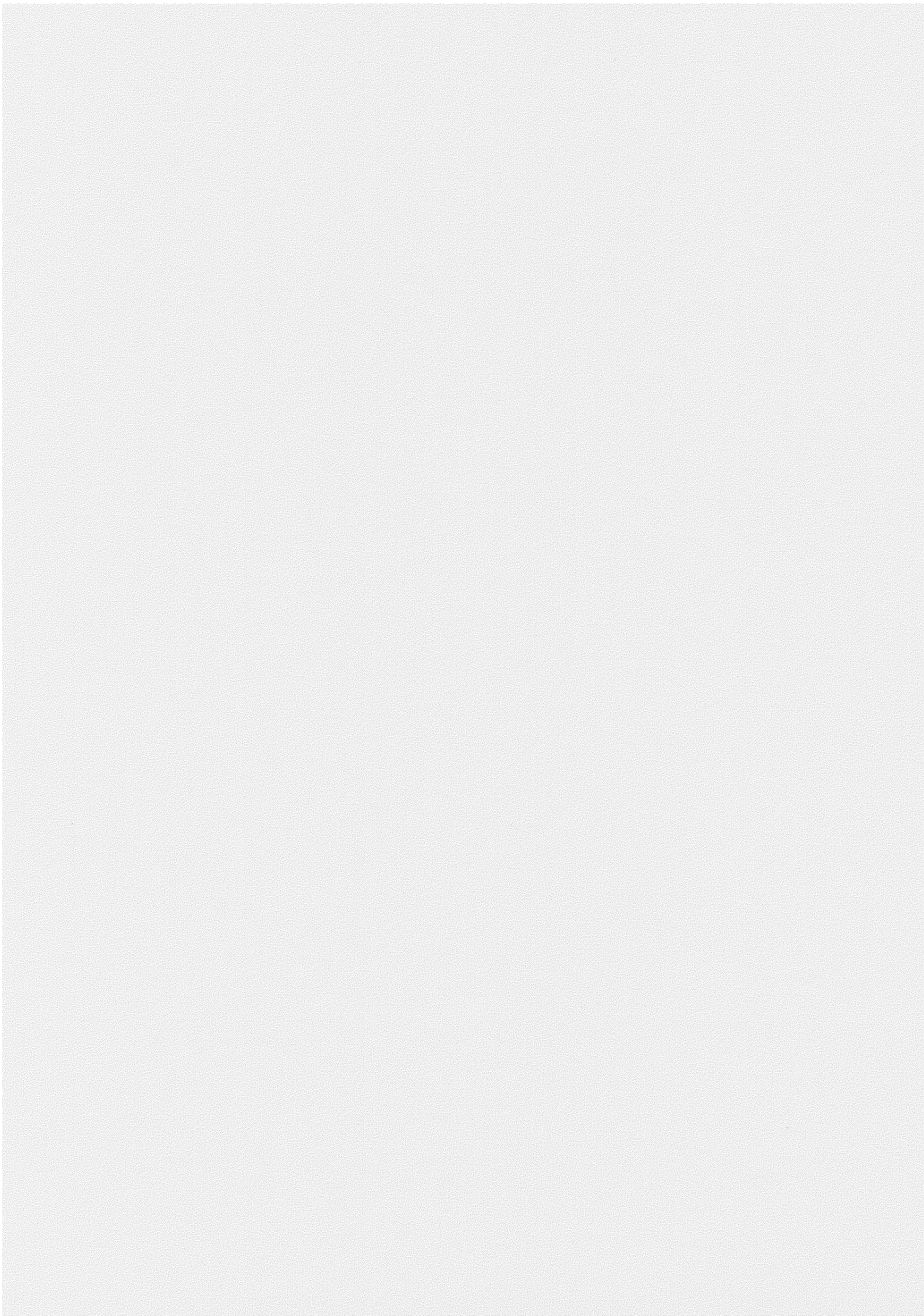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45
II.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47
III.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53
IV. 부록	
1. 의사일정안 .....	16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5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1
4. 조례심사보고서 .....	187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8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교육기관방문의건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교육기관방문의건(의장 제의)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안성배 중등교육

과장님께서서는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차 출장중으로, 전찬동 초등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님께서서는 지역교육청 장학지도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와 제184회 정기회 및 제18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에 이송한 안건 중 도의회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6건의 조례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

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며, 4건의 조례안은 2005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결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증원을 요구한 44명 중 30명을 감원하여 14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1일 객실사용료를 만원씩 일률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전공제회 출연금 3억원 외에 학생회관 등 2개 기관 비정규직 인건비 1억 2,462만 8,000원, 충주여상 등 2개교 시설사업비 1억 7,738만 6,000원, 예성초 등 3개교 다목적실 소방시설비 2억 6,834만원 등 총 5억 7,03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12월 16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현재 예결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교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교육기관방문의건과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시고,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 및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를 폐지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며,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특별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일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면지역 명칭 조례에 따른 학교 주소 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년 3월 1일자로 올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밀학교인 충주 중앙초를 분리하고자 충주시 금능동 31번지에 2006년 3월 1일자로 금능초등학교 개교와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비봉초등학교와 각리중학교를 2006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과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학과 개편에 따른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충주시 동 및 읍·면·리

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상모면 소재 학교 주소를 수안보면으로 주소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교육기관방문의견

(11시 14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옳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취학 편의 및 특수교육 방법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금번 회기중인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특수학교인 청주 혜화학교 및 송덕학교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북이초등학교 및 탄금중학교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

[제186회-제1차 본회의]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진옥경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2월 23일 (금요일) 14시 00분

## 議事日程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o 5분자유발언(성영용 위원)

(14시 00분 개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차,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께서서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시험 준비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으로 12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

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특별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년 3월 1일자로 올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밀학교인 충주 중앙초를 분리하고자 충주시 금능동 31번지에 2006년 3월 1일자로 금능초등학교의 개교와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비봉초등학교, 각리중학교를 2006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과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학과 개편에 따른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상모면 소재 학교 주소를 수안보면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 들으셨네요.”)

● 의장 고규강

예, 못 들었어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제가 안전

심의 보고서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을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은.....”)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5분 자유발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우리 1항과 2항에서 심사보고 주요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과 토론 주요내용을 전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 주요내용은 집행청에서 나온 부분들을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과 토론 주요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그야말로 주요한 것은 심사보고서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예, 맞는 말씀인데,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을 여기 생략을 했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것들을 주요내용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충청북도의 교육도 인재양성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는 교육정책이 더욱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을 보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1월 중순에 고입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최종 고사가 끝난 후에 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12월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시기임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쉬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학교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안됨은 물론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교육관계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써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교과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심야 야간 자율학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력향상 및 대입경쟁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의 진학문제 뿐만 아니라 진학 이후에도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어 고민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의 초·중등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일수록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초실력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초학력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걸맞는 학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의 부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 같이 더욱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이 단위학교별 상대평가 성적, 즉 100% 내신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하여 수업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은 물론 중도 포기자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학생생활지도 문제에 연결되어 우리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학교 폭력문제와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은 평상시는 물론 학년도 말에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교육청에서도 공문지시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및 생활지도를 환기시키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부실정도와 학생사고는 점점 증가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보습학원에 가고 학원에서는 전 학년도 각 학교의 평가문제지 및 출판사 문제지를 이용하여 암기식 학습을 하며, 학생들은 사고보다도 단순암기가 용이하므로 학교교육보다는 학원교육을 선호함으로써 사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정경제를 어렵게 함은 물론, 상급학교에서 학습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도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입선

발고사가 아닌 언어영역과 수리, 사회, 과학탐구, 외국어영역 등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실시한 결과를 20 내지 30%를 고등학교 입학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고양 시키는 물론 바른 학습태도를 기르고 유지시키기 위한 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고입 수학능력 고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학생 수준에 알맞은 대입수능 문제의 출제 경향으로 출제하게 되면 단순 암기 학습방법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며, 초·중·고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은 물론, 대학과정 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육성될 것입니다.

둘째, 단위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 으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여, 같은 집단에서 학력의 양극화를 최소화하여 학습효과 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제시 되고 평가되므로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 고 교과지도가 될 것입니다.

넷째, 반영비율이 적고 수능능력의 문 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의 내용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예·체능 교육 및 활동 중심의 교과는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

련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업에 대한 관심과 교사들의 책임감이 증대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학력이 신장되고 학생 생활지도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운영 측면이나 예산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고 입 선발고사를 실시했던 것처럼 평가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출제하고 평가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면 적은 예산으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내신성적과 고입 수능점수를 알고 고입원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행의 내신성적에 의한 고등학교 진학방법과 대 동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교육행정의 최대 서비스는 사교육비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희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인재 양성밖에 없 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 전북을 비롯한 7개 시·도에서 고입선발고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력신장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입 수능시험의 실시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2회의 집회와 59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및 조례 등 70여 건의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만 7천여 교육가족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

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올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써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14년이 흐른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일반자치의 통합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시키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다른 OECD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고서도 교육에 대한 인색한 투자로 2005년도 교육재정이 GDP대비 4%대인 것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법정 정원에 비해 부족한 교원 수와 교육 기본 시설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인프라는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어 교육을 아끼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제186회-제2차 본회의]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교육재정이 GDP대비 6%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행정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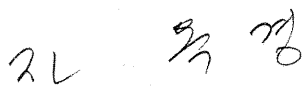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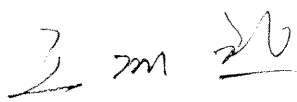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12.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진 옥 경 

위 원 김 남 훈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86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12. 19.~12. 23.(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9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12. 19.~12. 23.(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
12월 20일(화) ~ 12월22일(목)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방문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12월 23일(금) (14: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86-1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12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2월 9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1
----------	-------

제출연월일 : 2005. 12.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안 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라.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용(안 제18조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안 제22조제1항 별표 2)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시기 조정(부칙 제3항)

학교근무 직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함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교육감”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공무원중 규칙(행정자치부령)”을 “「공무원중 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동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동조제7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으로, 동조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 규정”을 “「정부표창 규정」”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 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22조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p>	<p>제14조(-----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p>

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  
-----  
-----  
-----

②~⑤ (생략)  
(신설)

②~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제22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④~⑤ (생략)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한하이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

할 수 있다.

제22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 략)

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결혼	-----	7
	자 녀	1		(삭 제)	(삭 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삭 제)	(삭 제)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삭 제)	(삭 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삭 제)	(삭 제)
출산	배우자	3	출산	-----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 제)	(삭 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 제)	(삭 제)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탈상	(삭 제)	(삭 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1		(삭 제)	(삭 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삭 제)	(삭 제)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 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86-2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12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2월 9일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2
----------	-------

제출연월일 : 2005. 12.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이유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학교의 주소 변경을 위해 도립 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 신설  
(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 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안 별표 1)
- 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함(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개정조례안 : 붙 임

조례개정 변경 내용

○ 학교신설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원년월일	설립사유
울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1034번지	2006. 3. 1	유아교육 기회확대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2006. 3. 1	중앙초분리
비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2006. 9. 1	오창과학 산업단지 학생수용

-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각리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2006. 9. 1	오창과학 산업단지 학생수용

○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경년월일	변 경 사 유
의림공업 고등학교	제천산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	2006. 3. 1	운영체제 개편
영동농공 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 고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	2006. 3. 1	학과 개편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중 수안보중학교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오창중학교란 다음에 각리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각리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	-------------------------

별표 4의 수안보초등학교, 수회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충주용산초등학교란 다음에 금능초등학교란을, 각리초등학교란 다음에 비봉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비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별표 6의 수안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주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율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율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34번지
--------------	-------------------------

###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각리중학교 및 별표 4중 비봉초등학교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조표

[별표 1]

### 고등학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의림공업	고등학교	(생	략)	제천산업	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영동농공	고등학교	(생	략)	영동산업	과학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별표 3]

### 중학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수안보	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51번지	.....	.....	수안보면	.....	.....
오창	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	.....	.....	.....	.....
< 신		설>		각리	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별표 4]

### 초등학교

현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수안보	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	.....	수안보면	.....	.....
수회	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	.....	수안보면	.....	.....
충주용산	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	.....	.....	.....	.....
< 신		설>		금능	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각리	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112-1번지	.....	.....	.....	.....	.....
< 신		설>		비봉	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별표 6]

유치원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수안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안보면
수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수안보면
주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3-3번지		
< 신	설 >	율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34번지

(별첨 4)

제186회 임시회

##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12.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12월 19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2월 1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2월 20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안 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안 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용(안 제18조 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안 제22조 제1항 별표 2)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함.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시기 조정(부칙 제3항)  
학교근무 직원의 특별 휴가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 까지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과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함.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 4. 토론 주요내용 : 생 략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며, 당해연도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 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특별 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12월 19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2월 1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2월 20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 가. 개정이유

-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학교의 주소 변경을 위해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 신설(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안 별표 1)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함(안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 3월 1일자로 울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밀 학교인 충주 중앙초를 분리하고자 충주시 금능동 31번지에 2006년 3월 1일자로 금능초등학교 개교와,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비봉초등학교, 각리중학교를 2006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과,
-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학과 개편에 따른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상모면 소재 학교 주소를 수안보면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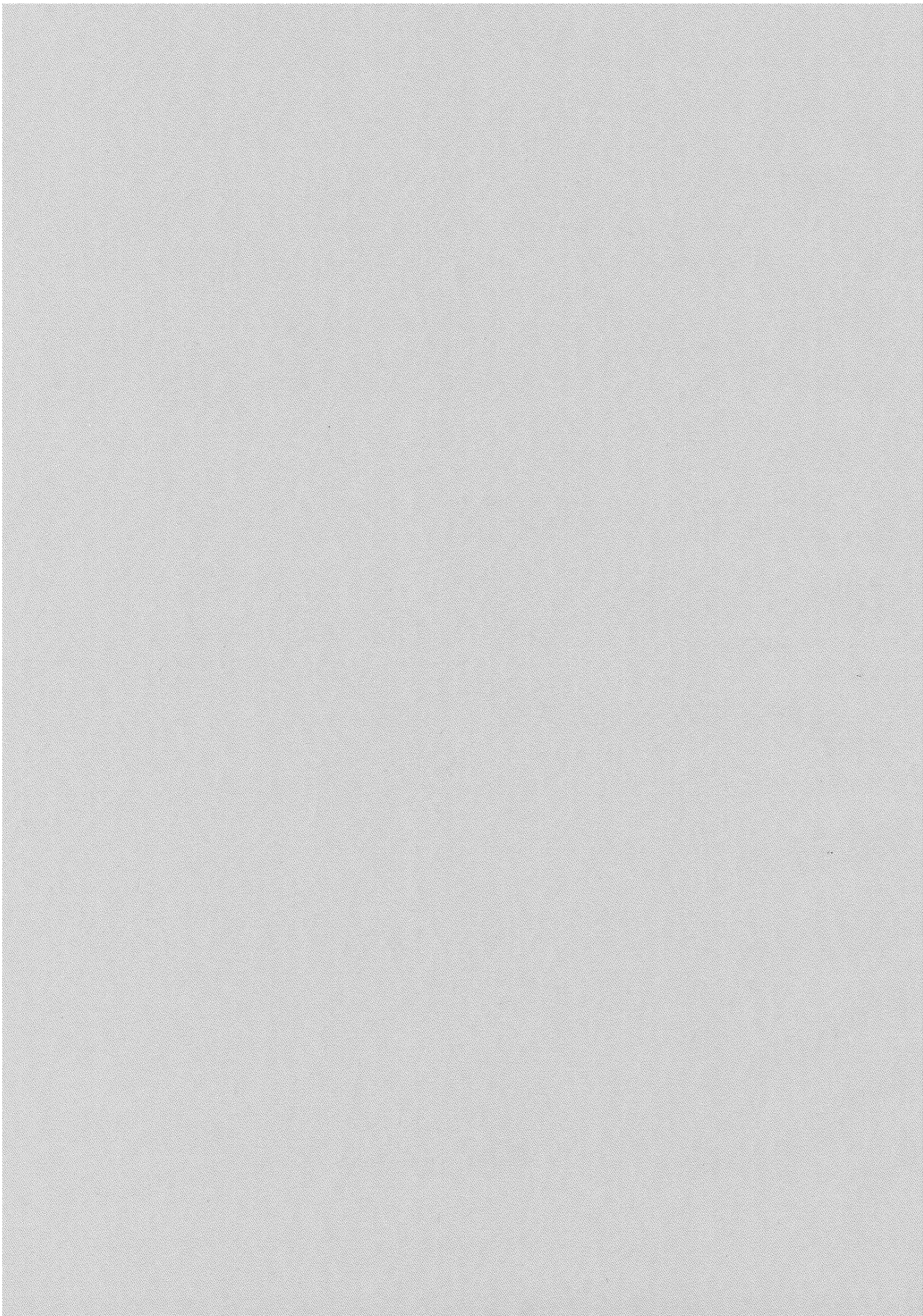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8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97

II.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1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225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11시 21분

## 議事日程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1분 개회) 습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4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이기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대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조례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5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12월 20일 2일간으로



(끝에 실음)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20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年 12월 20일 (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 위원장 성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

정되고,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제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간을 명확히 하고 또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나 번,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라 번,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 시 다음연도 휴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쪽 상단을 보시면 마 번,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

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시기의 조정입니다. 여긴 부칙에 각급 학교 근무하는 교직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특별휴가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남훈 위원

예, 제가.....

#### ● 위원장 성영웅

김남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편은 지금 현재 본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금 현재 토요일 날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무하는 날은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시간외근무는 우리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원과 똑같이 주5일 수업하는 날은 같이 휴무를 하고 같이 근무를 하며 휴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학교에는 월 한 번밖에 휴무를 안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죠.

● 김남훈 위원

그럼 나머지 3주간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3주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는 얘기에요. 저는 그걸로 봤는데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아닙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에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현재 교원들이 근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주5일 따져도 현재 40시간이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하고 형평이 맞고 그래서 여기 시간외근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편은 시간외근무를 정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다고 했거든, 포함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토요일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것은 나 번의 그 조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다 하는 것은 요거에 해당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5일제 수업 마지막 5일제 수업하는 날 토요일날 만약에 일반직이 근무를 하게 되면 교원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외근무로 포함을 시

킨다 그런 뜻입니다.

● 김남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 될 때까지는 특별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축소를 안하고 종전같이 둔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경조사별 휴가일수 대조표를 보면 거기 삭제라고 쪽 써놨는데 지금 결혼에 보면 자녀결혼에 삭제하고서 왼쪽에는 현행에는 하루 했던 말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 것이 쪽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이틀이나 사흘을 했는데 현행에는 하루로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 김남훈 위원

아주 없애버렸다?

● 총무과장 이상기

11쪽을 보시면 됩니다. 11쪽을 보시면 현행 자녀의 결혼에 하루를 연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걸 삭제해서 하루도 못 얻게 됩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연가를 내서 이걸 자녀 저기를 치르기 위해 특별휴가를 맡아야 되겠네.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대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개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그때까지 다 이걸 또 특별휴가를 인정해 주면 주40시간의 규정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결혼이 종전에는 하루의 연가를 얻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걸 삭제한 것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요일 같은데 사실 형제자매나 자녀 같은 결혼을 했을 적에는 특별휴가에 포함되지 않죠. 토요일 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냈을지 몰라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 와서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삭제,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삭제, 전부 탈상도 삭제 삭제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내 풍토와 이것이 적합한가 의문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것은 원 기본이 주40시간 근무에 맞춘다 보니까 경조사휴가가 축소가 됐고,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휴가형식을 빌려서 이런 행사를 치렀는데 앞으로는 특별휴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연가 쪽에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만 되겠네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맞추는 모양 같은데, 지금 주40시간이라는 얘기는 토요일을 빼고 하더라도 사실 하루에 9시간 하면 금요일까지만 해도 오구 사십오 거의 40시간이 넘는 얘기죠, 토요일 빼도.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하루에 9시간이 아니고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 간사 이기수

점심시간을 빼면 몇 시간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

● 총무과장 이상기

8시간이죠.

그러니까 오후 사십 40시간이죠.

● 간사 이기수

40시간이죠.

그러면 토요일을 아직까지는 전부 쉽니까, 안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청, 지

역교육청, 직속기관은 전부 토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했던 상훈법에 의한 포상휴가라든지 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선발됐을 때 포상휴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휴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40시간이라는데 저축이 된다고 해 갖고서 따지면 꼬박 근무하면 40시간은 되지만 이런 상황을 전부 삭제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위법에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또 쓸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이걸 경조사휴가고 특별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40시간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가 되고 또 자기 공무원 본인이 재직기간 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가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금년에 여러 가지 경조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연가를 많이 사용을 하고 부족이 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을 2분의 1 범위에서 앞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요런 탄력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의 병폐를 보완해 주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휴가만 우리가 축소를 하고 자기 공무원이 개인이 연가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완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주40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한 것은 요번에 이게 된 겁니까, 원래 전서부터 이 40시간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2회 휴무를 했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주40시간제라 그래 가지고서 전면 토요일을 전부 휴무하는 그렇게 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주40시간제 근무의 방침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정착이 됐는데, 요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지방복무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요번 복무조례에다가 주40시간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40시간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5일 근무가 되면서부터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맞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그것이 주5일제라고 안그리고 용어가 주40시간 이렇게 바뀐 겁니다.

● **간사 이기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토요일 날이나 혹은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 규정은 우리 개정조례가 되면서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설명이 없고요, 우리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복무규정에는 뭐뭐 할 수 있다, 토요일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에는 공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

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장을 해 주는 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들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육감님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제12조 3항에 보면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정할 수 없는 사항은 교육감 지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일례로 우리가 도교육청 같으면 토요일 민원인들을 위해서 현재 토요일날 민원실에는 한 사람씩 교대로 해 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어느 한 주에 자기가 필요한 때에 4시간을 휴무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해 주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방행정공무원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때문이라

고 하는데, 사실 점심시간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서비스도 민원행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들도 지켜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선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중식시간을 12시부터 1시간까지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점심시간에 탄력적인 운영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는 경우 또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게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거의 12시에서 1시 이것이 거의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구태여 지금 현행에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많은 뭐랄까 신축적인 융통

성을 부여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어떤 점심시간마저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행정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축성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민원서비스도 그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에게도 그것들을 공지하고 가급적이면 이것들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도록 권장드립니다, 제가.

● 총무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지역과 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그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동일합니다.

● 진옥경 위원

결국 주40시간 근무라는 것들도 삶의 질을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조금 어떤 부분들을 다시 또 희생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성휴가 있죠, 보건휴가가 있는데 그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보건휴가가 인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보건휴가가 1일을 줄 수 있는데 월 거기에 유급으로 했거든요, 유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무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유급으로 이제까지는 인정되어 왔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유급으로 되어왔죠.

● 진옥경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래서 요번에 이런 특별휴가가 축소되면서 여성들에게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복무규정에.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글쎄, 그래서 이게 아마 여성들에게만은 월 그렇게 되면 1년 12달 12번이기 때

문에 아마 주40시간제하고 배치가 되고, 자기 연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서 공평하고 형평에 맞도록 아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쨌거나 이거는 퇴보임이 분명하고 제가 여성계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잠정적인 확인을 여성계에서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더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성권 보호 차원에서 그간에 어떤 그것들을 인정해 왔던 부분이 퇴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게 주40시간 근무제로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교육행정직은 토요일도 근무를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시간이 넘는단 말  
이에요, 거기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점심시간  
은 근무에서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는 근무시간이 9시에서 5시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오칠이 삼십오 35하고 4시간  
하고 39시간이 되는 겁니다. 학교는 따지  
고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일반 행정기관은 지난번에는 하절기 때는  
6시까지 했고 그 다음 동절기에는 5시까  
지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됴으로써 9시  
부터 춘하추동 사계절을 다 6시까지 근무  
를 하게 되는 것이죠.

● **이상일 위원**

그럼 일선학교의 행정실은 퇴근시간이  
5시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이상기**

네. 행정실도 같이 교원하고 출퇴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5일제하는 날도  
같이 쉬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이 거기선  
나름대로 맞죠.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계시면 더 하시

고 제가 추가 질문을 그냥.....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진옥경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도 제가 공무원님 하고 전화를 하  
는 중에 아침에도 7시 반에 나오신다 하  
고 저녁에도 늦게 가신다는 경우들이 있  
는 걸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근  
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외의 근무를 전부 수당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  
시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초과근무를 인정해 가지고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남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

● **위원장 성영용**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일선학교의 점심시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뺀다고 하셨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일반직에 해당되어서 답변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똑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생과 같이 동반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지금 본청 직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외식해도 상관없고 뭐 그렇게 자의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점심시간을 나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고 여기에선 다만 규정하는 것은 중식시간을 몇 시부터 1시간을 준다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김남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직 같으면 상관없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내버려두고서 나와서 식사 지도를 하지 않고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제동행을 해서 점심식사지도도 하고 다 하는데 급식소에 너희들끼리 먹어 하고서 선생님이 나가서 먹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범위만 정해 준 것이고 운영하는 것은 각 학교장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교육과정 방향에서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애들 내팽개치고.....

● 김남훈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원칙론적인 답변이고

● 총무과장 이상기

글쎄 우리가 여기 법에 규정에는 중식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근무시간 요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학교장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볼 때는 나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에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상기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식사예절교육을 당번을 맡아서 하는 세세한 운영은 학교장이 정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잠시 김남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복무시간이 '8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등교지도 및 점심식사 지도로 해서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87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에 대한 점심시간 직무에 관한 그 부분은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이 운영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어떤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7시까지를 근무를 말씀하셨습니까마는 일선학교에서는 전부 18시에 퇴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어두운데도 불 켜놓고 다들 있어요, 6시까지 기다리느라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17시에 끝난다는 공문이 내려가서 일반직 행정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없이 1시간씩 더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면 지역 명칭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년 3월 1일자로 울랑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밀학교인 충주 중앙초를 분리하고자 충주시 금릉동 31번지에 내년 3월 1일자로 금릉초등학교 개교와, 택지개발지구내에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비봉초등학교, 각리중학교를 내년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과,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학과개편에 따른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 지역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상모면 소재 학교주소를 수안보면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교명의 설치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교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의 성격을 나타내서 교명을 잡습니다. 우리가 인문계고등학교 또 실업계고등학교 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예능계열, 체육계열,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그게 우리 도는 수산이 없는데 수산계열이 이렇게 있어요. 수산학교의 수산계열, 그 성격에 따라서 거기 학과가 설치되고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산업계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산업이 붙어 있어요. 영동농업고등학교가 영동산업과학고

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의림공업고등학교가 제천산업고등학교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설명 제시한 자료에 보면 의림공고에는 전기과 두 학급만 있던 것을 한 학급을 뷰티미용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뷰티미용과가 하나 넣어서 전기과 한 학급, 뷰티미용과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 공업계열이 산업계고등학교로 바뀐다 이거예요, 가사계열 뷰티미용과를 가사계열로 농·공·상·가·실업 중에서 가사계열로 보는 것인지 하여간 산업계고등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한 성격 상으로.

또 영동농업고등학교도 영동농공고등학교 농업계열하고 공업계열이 같이 있던 성격의 학교였습니다. 이것이 거기 식품가공과라고 하는 농업계열의 식품가공과 한 학급을 바이오, 요새 바이오가 인기가 되니까 바이오를 많이 붙이는데 생명공학의 그 바이오식품공학과 한 학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이 바이오식품과로 가면서 공업계열로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그렇게 전문 조예가 없어서 깊이 연구를 못해서 오늘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각 계열은 뭐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대학의 동일계 진학하고 상당히 실업계고등학교의 동일계 진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인기 있다는

과를 함부로 자꾸 바꾸는 것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이것이 3년 후에 과연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동일계 진학 학과하고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깊은 조예가 없는 부분의 하나는 산업계 계열의 학과가 대학에 어떤 것이 있으며, 고등학교에 산업계 계열학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뷰티미용과가 바로 이런 것을 산업계 계열학과라고 하는지 아니면 식품가공과를 바이오식품과로 바꾸면 이게 산업계 학과의 계열인 것인지, 대학의 산업계 계열을 나와서 있다고 한다면 산업계 계열이라면 농·공·상·가·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산업계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있다고 했을 때는 대학의 동일계 진학에 산업계열이 어떤 과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여기 원안가결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줬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한 부씩 다 복사 해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 교명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



각도 들어서,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왜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 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이나 동일계 진학이나 학과설치나, 또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뷰티미용과로 했다고 한다면 2006년도 내년 예산에 거기에 대한 시설, 설비, 재료 등등이 우리 예산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아이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한 밑에 영동농공고등학교 식품가공과하고 이게 농업계열에서 공업계열인 바이오식품과로 바뀐다고 하니까 과연 교육과정이 식품가공과 그 교육과정 가지고 바이오식품과 그냥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인지, 더 예산이 필요해서 어떠한 교재, 교구,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등이 준비되어 가지고 2006년 3월부터 신입생 뽑고 이런 절차가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항상 우리 실업교육에 늘상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방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사회나 또는 산업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업계 경쟁력을 높이도록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을 우선해서 이걸 가장 큰 실업교육 추진하면서 제일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학과개편계획을 저희가 금년 4월 30일까지 제출을 받아 갖고 이것을 갖다가 검토회의와 그 다음에 충청북도직업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요 안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바꾸더라도 지금 아까 하나 수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동농공고는 공업계 처음에 운영체제를 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게 농공계열입니다. 거기에는 전자기계과 두 학급 그 다음에 식품가공과 한 학급 이렇게 3학급이 한 학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공업계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학교에서 처음에 당초에 의견이 왔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북직업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그대로 농공계열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 송대현 위원

공업계열이 아니네요.

자료 준 거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아니 요 밑에 맨 뒷장 끝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이라고 조치계획에 보면 영동 농공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운영 체제가 농업·공업계열로 그냥 존치 하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하고 이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 송대헌 위원

맨 밑에 조치계획에 심의위원회에서 농업·공업계열로 그냥 존속하고 교명만 농업이라는 말을 빼고 산업을 넣었다는 얘기군요, 산업과학을 넣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식품가공과하고 바이오식품과가 다 농업계열입니까, 공업계열입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농업계열로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바이오식품과가 공업계열이에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농업계열로 유지합니다.

● 송대헌 위원

농업계열이죠.

나는 이 자료만 봐서는 식품가공과 한 학급을 바이오식품과 한 학급으로 바꿈으로써 공업계열로 되었다고 이렇게 표시된

결로 알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예요.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농업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계열이 존속하는 거예요. 영동이 농업계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공업계열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다만 이름이 농업·공업하면 복잡하니까 산업이라는 산업과학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습니다.

바이오가공과하고 식품가공과하고 교육 과정이 많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일부 바이오 관련되는.....

● 송대헌 위원

몇%정도가 상이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저희가 봤을 때 한 30%정도

● 송대헌 위원

상이하고 식품가공과나 바이오가공과 전부 한 30%정도는 다르고 나머지는 유사하다 이거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 송대헌 위원

그렇다면 계속 설명하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동일계 진학할 때 동일계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학에 진학할 때 저희가 산업고등학교가 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해서 계열이 산업계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수산 이렇게 계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계 진학이라는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2006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학과개편이나 교명변경에 따른 준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되는 실험실습 시설설비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구입할 수 있도록 2006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고 또 하나 의림공고 쪽 얘기를 해보시죠.

뷰티미용과 관계, 의림공고가 전기과 두 학급에서 한 학급을 뷰티미용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전기과 한 학급을 현행 유지하고 원래는 공업고등학교에 전기과 두 학급만 있을 때는 공업고등학교 공업계열로 똑 떨어져었는데 뷰티미용과를 가사계열로 보시는 것이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 송대헌 위원

가사계열로 하나 뷰티미용과를 바꿔놓다 보니까 공업이라고 하기도 맞하고 가사계열이라고 하기도 맞하고 하니까 산업계고라고 바꿨다는 얘기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 송대헌 위원

그 명칭을 바꾼 내용이, 앞으로 뷰티미용과 애들은 동일계가 되어도 가사계열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전기과는 공업계열로 가는 것이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산업계열이라고 하는 본 위원도 계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칭상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붙인 것 같아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았고, 또 하나 본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만 곁들여서 실업하고 관련되는 걸 여쭙보겠습니다.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라고 하든가요 골프 뭐가 있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골프환경과입니다.

● 송대헌 위원

그것이 체육계열입니까, 농업계열입니까?

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그건 농업계열입니다.

● 송대현 위원

농업계열이죠, 분명히.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네.

● 송대현 위원

그런데 전국에 농업계열에 골프환경과는 본 위원이 찾기로써는 동일계에서 못 찾아봤습니다. 체육계열에 골프과는 있어요. 체육계열에 골프과는 전국에 동일 대학 여러 대학에 설치가 되어서 골프과가 있는데, 골프환경과는 뭐 풀이 잘 자라느냐, 제초제가 잘 되느냐, 나무가 잘 크느냐 이런 골프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 분명히 농업계열로 생각이 되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졸업생이 나올 것 같은데 동일계 진학을 갈 적에 이 애들이 체육계로 가려면 동일계 혜택을 못 받았습시다.

농업고등학교에서 골프과로 가려고 하면 동일 그거 안 줍니다. 동일계 진학이 안돼요. 그러면 전국 대학의 골프환경과라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자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새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4년제나 전문제 대학에 80%이상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이 설치학과

할 때 내가 문제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할 적에 동일계 진학이 되느냐 했는데 혹시 그 뒤에라도 설치된 대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제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국에 동일계 진학에 갈 수 있는 청주농고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환경과 학생들이 내년에 졸업해서 동일계 진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의 대학이 어떤 과가 있는지 어느 대학에 어느 과가 있는지 아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 정보가 지금 없으시면 다음이라도 자료를 일선학교 자료를 보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청주농고가 골프환경과가 2005년도에 금년도에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후년에 졸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환경과를 하면서 저희가 요걸 세우기전에 청주농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함평골프고등학교에 같이 가서 사전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었는데요, 그 학교도 가서 보니까 골프선수도 육성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골프환경도 관리하는 이런 계열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수를 육성하다 보니까 체육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실제 운영했던 목표하고 변질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제일 그 부분이 아주 고민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송대헌 위원님 본 조례안에 관한 사항만 하고 그 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그래서 청주농고는 골프환경과는 농업계열이고 이 학생들이 대학가면 농업계열로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업계로 갈 수 있는 기본교과 3개 필수교과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게 있는데 그 3개 교과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농업계열이고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동일계열 진학이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전국에 골프환경과라고 하는 농업계열 농과대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농업계열이야 많죠, 농과대도 있고 다 농업계열이지만 전국 대학 중에 골프환경과라고 하는 농과대학에 있는 그게 동일

계열입니다. 아무 데나 공과대학 쪽에 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과대학에 골프환경과가 있는 학교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알았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아시겠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예.

● 송대헌 위원

농업계열이라고 간다고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 의림공고에 뷰티미용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 적절하게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라든지 사회적 부응에 의해서 학과를 개편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요즘 궁금한 게 교육과정을 운

영하다 보면은 일단 뷰티미용에 대한 교원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지금 제천 의림공고의 뷰티미용과 설치에 따라서 이제 2006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되었을 때 전문 교과교사가 일단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뷰티미용 부전공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과신청을 해 갖고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뷰티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머리서부터 화장이니 손톱이니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할 텐데 그런 거는 외래강사를 채용합니까, 한 분 가지고서 모든 게 다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2006년 1학년 때에는 그게 되고요, 기본교과목에 교육부에 지정한 전공보다 계열에 따르는 그 과목을 컴퓨터일반이든 기본계열과목을 세 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그걸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뷰티라고 해서 세분되어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용교사, 미용중등 2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미용에 관련되는 얼굴이라든지 페이스 또는 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배우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굳이 어려운 교사를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과목을 최고로 잘 가리키는 학원강사나 선생님을 시간강사로 채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 한 분한테 여러 가지 일을 맡겨 가지고 전문성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가령 어느 한 부분에 대단히 유능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시간강사라도 초청해서 하는 게, 지금 대학에서도 전임보다는 외래 특별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선생님 정원확보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 이런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얼마 전에 오래된 학교의 명칭이 느낌

이 안좋다 그래 가지고 중앙 TV에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안에 있는 어떤 작은 학교의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학교 명칭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충주에 있지요, 야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칭이 이상하다고 그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그렇듯이 이 학교명칭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학교명칭을 결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내에서 학교명칭이 좀 이상하다고 해 가지고 문제제기 한 학교는 현재는 저희들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보가 늦으신 것 같은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그 동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아주 애꿎은 소중한 이름이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구태여 이 이름이 어

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과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초등학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칭은 목령초등학교로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가지고 어떤 명칭이 좋은지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한 20일간 예고 기간을 뒤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비봉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목령이라는 목령산이 있는 모양이죠, 목령산이 오창 쪽으로 이게 산이 되어 있대요 그게 오창 쪽에선 상당히 적절치 않다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 목령초등학교가 적절치 않고 반대 의견이 많았고 비봉초등학교로 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을 정할 때, 비봉은 비봉산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인근에 비태봉이라는 봉이 있는데요 그걸 줄여서 비봉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하여튼 뭐랄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보라든지 이런데 통해서도 예고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인근 학교 또는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명칭변경 요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요번에 들어오신 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다른 데는 지금 금릉이라든가 비봉하고 저희들 각리, 각리중학교는 목령중학교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주소가 각리이다 보니까 목령중학교보다는 각리중학교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 옆에 바로 인근에 각리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리중학교로 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통계로써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대로 알고 싶

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초·중학교이다 보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이런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 진옥경 위원

그럼 교육청 의견입니까, 그러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이죠.

● 진옥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  
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서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  
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  
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  
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이기수,

위 원 김남훈, 송대헌,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5. 12. .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8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12.19.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12.20. (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